

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간선택제임기제(나급, 건축안전분야)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

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(나급)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
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0년 2월 일

서울특별시 마포구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

임용분야	임용 등급	임용 인원	근무 기간	근무예 정서	담당 직무내용
건축안전 분야	나 급	2명 (건축1명, 구조1명) 주 20시간 이상~ 35시간이내	최초 임용일 부터 1년	도시안전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축 인허가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·확인·검토·심사 및 점검 ○ 건축공사장의 안전점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형, 중소형, 철거 건축공사장/ 특별안전점검 - 공사장 관리자 안전교육 실시 ○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 감독 ○ 주택유지(노후, 내진, 화재 등 취약 건축물) 및 관리에 따른 기술 지원 업무수행

※ 연장 :근무기간은 근무실적과 업무성과에 따라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년 단위로 연장가능

※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면접시험에서의 평정성적이 차하위자 순으로 선발

2. 법령 근거

-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
- 지방공무원 임용령
-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
-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

3. 응시 자격 요건

○ **공통 응시자격 요건** 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-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,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(부정 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※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- **지역·연령·성별 : 제한 없음** 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
○ **선발 직무분야별 응시자격 요건** :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※ 응시희망지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
구 분	임 용 자 격
시간선택제임 기제 나급	◇ 건축법 제87조의2(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)에 따라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,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별표1)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 특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※ 『국가기술자격법』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※ (우대) 구조해석프로그램 및 CAD, 안전진단장비 사용 가능자, 운전면허 소지자 우대

4. 근무조건

- 계약기간 : 최초 임용일로부터 1년(2년 단위로 연장가능)
- 근무시간 : 주 35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나, 계약 당사자와 근무일수·시간 조정 가능 (주. 20시간 이상 ~ 35시간 이내)
- 보수 : 연봉 하한액 44,261천원(주35시간 근무기준)
 - ※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 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·경력 등을 고려하여 120% 범위 내에서 협의 결정함
 - ※ 연봉 외 급여는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 - ※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(실업급여에 한함)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(단,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5.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○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0. 2. 28.(금) ~ 3. 03.(화), <3일간 09:00~18:00>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, 우편접수(인터넷, FAX 접수 등 불가)
- 접 수 처 : 마포구청 도시안전과
 - 주 소 : (03937)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(성산동) 11층 도시안전과
- ※ 등기우편만 가능하며,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함
- ※ 응시원서 양식(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)은 공고문 **붙임 2 제출서류 양식**을 출력하여 사용
- ※ 마포구 수입증지(2층 민원여권과 7번창구)를 인증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
- ※ 대리접수,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

○ 시험일정

서류 전형 합격자(1차)발표 및 면접시험공고	면 접 시 험		면접합격자 발표
	일 시	장 소	
2020. 3. 6.(금)	2020. 3. 11.(수) 15:00	마포구청 (7층회의실)	2020. 3. 12.(목)

- ※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,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통지함 (다만,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)

가. 1차 시험(서류전형)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
- 다만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
- ※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, 경력 및 업무실적, 직무관련 자격증,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별도 설정·시행

나. 2차 시험(면접시험)

-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·중·하로 평가
- ※ 평정요소 :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
- 직무과제 보고서 작성, 개별 심층면접 등을 통해 응시자의 자질 및 발전 가능성, 전문성, 조직원으로서의 직무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
-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
다. 면접합격자 발표

- 마포구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통보
- ※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,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.
- ※ 최종합격자 공고 및 임용은 채용기관(근무예정부서)에서 면접합격자 발표 공고이후 시행됨.
- ※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6. 제출서류

가. 공통사항(필수사항)

- 응시원서(첨부 1호 서식) 1부.
- 응시수수료(7,000원) 상당 마포구 수입증지 인증
- ※ 구입장소 : 마포구청 2층 민원여권과 내 7번 창구
- ※ 응시원서 접수시 수입증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 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,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 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이력서(첨부 2호 서식) 1부
 -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 「<http://www.nhic.or.kr>」 발급) 등 증빙자료 제출
- 자기소개서(첨부3 서식) 1부
- 직무수행계획서(첨부 4호 서식) 1부
-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(첨부 5호 서식) 1부
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첨부 6호 서식) 1부
-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(첨부 7호 서식) 1부
- 동일계통학과 증명서(첨부 8호 서식) 1부
- 겸직 허가 신청서 (별첨 1 서식) 1부
-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(원본)(사본제출 시 원본지참)
 - 경력(재직)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(원본)에 한해 인정
 -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(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 하고,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
 -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,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
-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1부(원본)
 -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
- ▶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, 한글 번역본(공증필)을 반드시 첨부
- ▶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(경력증명서 제외),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,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
- ▶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,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7. 기타(유의)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.
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 조사 및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.
-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)
-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마포구청 홈페이지 공고란에 공고합니다.
- 임기제 공무원은 임용기간 중 영리업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.
 - ☞ 영리업무 종사금지 : ①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 ②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 ③ 지자체에 상반되는 이익을 취할 우려 ④ 지자체에 불명예가 될 우려
- 겸직 일부 허가 - (신청서, 별지1호 서식)
 - ☞ 겸직 허가 요건 :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금지대상이 되는 영리업무 해당되지 않아야 함.
 - ☞ 겸직불허 요건 : 공무원이 특정회사의 특수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
- 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기타 상세한 내용은 마포구청 도시안전과 (☎ 02-3153 - 608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제출서류 양식 1부.